

박형준 / 2월+3월+5월 / 도약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29059	20.2	14	20	10.5	64.7	1	2.63%	7	38
534241	20.7	14	18.5	10	63.2	2	5.26%	7	
534806	18.5	13.5	18	11	61	3	7.89%	6	
529237	19	13.5	16.5	10.5	59.5	4	10.53%	5	
534196	20.7	12.5	16	10	59.2	5	13.16%	6	
534160	20.7	14	13.2	10.5	58.4	6	15.79%	5	
534343	20	13	15.5	9	57.5	7	18.42%	4	
534231	19.5	13.5	14.5	8.5	56	8	21.05%	6	
534194	19.5	13	11.5	11	55	9	23.68%	4	
534175	20.7	10.5	13	10.5	54.7	10	26.32%	5	
534165	20.5	10.5	14.5	9	54.5	11	28.95%	5	
534166	18.5	12	16	7.5	54	12	31.58%	4	
534381	20.7	13	12	7.5	53.2	13	34.21%	6	
534233	19	13	13	7.5	52.5	14	36.84%	4	
534161	20.7	12.5	12	6.5	51.7	15	39.47%	5	
534355	20	11	12	8.5	51.5	16	42.11%	5	
534348	18.5	12.5	12	8	51	17	44.74%	5	
534388	18.5	12	11	9.2	50.7	18	47.37%	5	
534391	19	13	10	8.5	50.5	19	50.00%	4	
536423	20	11.5	11.5	7.5	50.5	19	50.00%	5	
534365	20.2	6.5	14.5	9	50.2	21	55.26%	5	
529129	17.5	11.5	14	7	50	22	57.89%	5	
529165	19.5	11.5	11.5	7.5	50	22	57.89%	5	
534423	19.5	12	13.5	5	50	22	57.89%	6	
542857	17.5	11.5	13	8	50	22	57.89%	5	
529402	20.7	12.5	12.5	4	49.7	26	68.42%	5	
534250	19.5	11	12	6.7	49.2	27	71.05%	4	
534426	18	13	11.5	6.5	49	28	73.68%	5	
529277	19.5	12	13	4	48.5	29	76.32%	4	
534347	18.5	6	14	10	48.5	29	76.32%	5	
534202	18.5	11	13.5	4.5	47.5	31	81.58%	6	
534187	17.5	10.5	13	6.2	47.2	32	84.21%	5	
534425	19.5	11	10	4.5	45	33	86.84%	5	
534188	15	12	8.5	7.5	43	34	89.47%	4	
534205	18	10	11.5	2.5	42	35	92.11%	5	
534163	18	10	8.5	1.5	38	36	94.74%	6	
534247	14.5	8	7.5	5.5	35.5	37	97.37%	5	
534396	19.5	0	8.5	2.5	30.5	38	100.00%	4	

<p>박형준/2월/도약GS/7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전반적으로 다들 잘 써주셨습니다. 논점이탈은 거의 없었으나 결론을 맞게 기재했는지 여부에서 점수가 갈리기도 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거절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답을 맞추셨습니다. 그 중 판례와 비판까지 언급해주는 답안이 돋보였습니다.</p> <p>(2) 설문 2</p> <p>구성요소 적격에 대한 판례와 키워드를 누락 없이 써주셨어야 합니다. 목차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강사님 답안처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성요소 적격 판례들을 모아서 기재한 후에 청구항 별로 판단한 답안도 가독성이 좋았습니다.</p> <p>(3) 설문 3</p> <p>다들 잘 쓰셨습니다. 문제에서 묻는바에 맞추어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과 하자 치유 여부로 크게 목차 잡고 써주시면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4) 설문 4</p> <p>라벨론과 종합적 판단 판례를 둘 다 기재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2월인데도 해당 판례 암기 정확도가 높았습니다.</p>	

3. 소결

2월이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압기나 논점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잘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박형준/2월/도약GS/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논점을 이탈하시거나 결론을 틀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복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기능식 청구항인 것 자체를 캐치 못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특유 청구항이 헛갈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마쿠쉬 청구항과 기능식 청구항, pbp 청구항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p> <p>그 외에도 결론을 틀리게 기재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순간적으로 헛갈려서 답을 틀릴 수 있는데, 답을 틀리게 되면 점수 감점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p> <p>(2) 설문 2</p> <p>균등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누락이 많았습니다. 침해라는 결론에 대해서 틀린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균등침해 판단에 대한 서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p> <p>3. 소결</p> <p>전형적인 논점이 아니고 답안을 자주 안 쓰는 논점이라서 실전 GS에서 다시 이 논점을 마주하셨을 때 틀리지 않도록 꼼꼼한 복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실전GS가 다가오면서 심적 부담감이 크실 수 있지만, 답안을 채점하면서 보면 다들 잘 쓰십니다. 현 시점에서는 등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채워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다들 파이팅입니다 !</p>	

<p>박형준/2월/도약GS/7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설문이 총 4개로 비교적 많으므로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결이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는지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중요 논점이므로 학설, 판례, 검토를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126조나 유력한 증거호 관련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에도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확인대상발명 확정 후 적법 특정 여부를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 확인대상발명 확정에 있어 선결적으로 140조 3항을 작성하거나 청구범위의 파악방법 판례를 작성하신 경우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확인대상발명을 발명 Z로 확정된 후에 이의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침해소송 계속 중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강하게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p> <p>이보다는 설문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 발명이 상이한 경우라고 주어졌으므로 이를 강하게 적고 위의 논점은 약하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p>	

(4) 설문 4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특허권이 장래로 소멸했을 때 심판의 취급을 물어 보는 설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검토의 결론이 다른 경우, 설문의 해결은 검토대로 내려주시고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따른 설문의 해결을 더 내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소결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빠뜨린 논점은 기본서나 판례집에 표시해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 복습해 주세요.

<p>박형준/2월/도약GS/7회/4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설문의 문는바가 명확하여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4번 문제인 만큼 시간 관리에 조금 더 유의해 주세요.</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권리 대 권리 심판으로서 부적법한지 검토 후 본안까지 판단해야 하는 설문이 있습니다.</p> <p>‘적부’와 ‘본안’을 목차를 달리하여 판단한 경우 가독성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본안에서 검토해야 하는 ‘이용 여부’ 판단을 적부에서 판단한 답안이 많았는데, 적부와 본안에서 해야 하는 판단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p> <p>(2) 설문 2</p> <p>선결적으로 140조 3항이나 확인대상발명의 파악방법 판례를 작성한 경우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또한 청구취지로서의 적법 특정 여부도 함께 사안 포섭한 경우 추가적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소결</p> <p>4문과 같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판례집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합니다.</p> <p>하루에 5개 정도의 판례를 틈틈이 읽어놓는다면 판례 문제가 그대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p>	

<문-17>

4.2

I. 질문 (1)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292항 불문

특허법은 산업입법인바, 출제반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은 옳하다.

2. 청구항 1 성질

청구항 1은 동원한징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의료행위반명'에 해당한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취사제 - 2극

사람의 질병 치료. 진단. 예방 등에 쓰이는 의료행위반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반명이라고 볼 수 없다.

4. 비판

산업은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의료업은 제 역사적 이유가 있으므로 취사제 부당하다는 견해 있다.

5. 검토

의사의 진료. 치료 행위에 제약이 가해져 인간의 권익성이 무시될 수 있는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현격제한 규정이 없는 점 등

려하는 때 취체 라당하다.

6. 사안

청구항 1은 의약품외반명으로서 선행사실 이용가능성 없으므로
거부이유 라당하다.

II. 선행 (2)

1. 신규성 의의. 취지-292 (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반명은 공지된 선행반명으로부터
적 신규한 것을 안다.

2. 청구항 2 내지 4 성질

청구항 2 내지 4는 모두 결막염 치료용 물질에 관한 것으로
즉시 의약품외반명에 해당한다.

3. 의약품외반명 구성요소 취체

(1) 의약품외반명 구성요소

의약품외반명 구성요소는 그 자체로서 의약품외반명의 구성
요소라 해당한다.

(2) 약리기제

약리기제는 발해 물질의 내재된 속성으로서 의약품외반
물질을 결정하는 계기에 분과하므로 의약품외반명을 특정하는

	<p>범위 내이며 구성요건으로서 의미는 가진 뿐 그 자체로 주</p>
	<p>범위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p>
<p>(3) 의약특여방법</p>	
	<p>특여방법은 의약용도라 그 물질이 같고, 의약특여방법은</p>
	<p>조출해내는 데에도 상당한 특자라 논쟁이 필요하네</p>
	<p>이런 특허법 상 특허로 변해해죽지 않는 것은 특허법 목</p>
	<p>적이 변해한다. 따라서 특여방법도 특허법상의 새로운 구</p>
	<p>성요건으로서 의미는 가진다.</p>
<p>4. 의약용도반영 신규성 판단 취지</p>	
	<p>의약용도반영 신규성 판단시 그 용도가 사해문헌이 구체</p>
	<p>적으로 개시된 경우 신규성 부정되며 그 효과가 명확하게</p>
	<p>확인되어 있을 것은 아니다.</p>
<p>5. 사안</p>	
<p>(1) 청구항 2</p>	<p>유도파라미터를 포함하는</p>
	<p>결핵염 치료용으로서 약학적 구성요소로 이는 출원시 공지 논문</p>
	<p>에 구체적으로 개시된 바 신규성 부정된다.</p>
<p>(2) 청구항 3</p>	
	<p>약리작용이 포함될 청구항으로서 약리작용은 구성요건으로서</p>
	<p>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청구항 관련 공지 논문이</p>
	<p>결핵염 치료용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시된 바 신규성 부정된다.</p>

(3) 청구항 4

의약투여방법이 기재된 청구항으로서 투여방법은 새로운 구성
요건으로 의미를 가진다. 투여방법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
적으로 기재된 사항 보이기 않아 신구성 부정될 수 없다.

6. 결론

청구항 2, 3 개조항을 라당하나, 청구항 4는 부당하다.

III. 결론 (3)

1. 용이실시 요건 의의. 취지 - 4223호1호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선행사행추가금지 - 41722호

제조사 불이익 방지란 위해, 본질 시 최초 명세서 등 기
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3. 의약용도변경의 생명 기재요건 취지

출원 시 약리효과가 기재된 약리효과이 명확하게 개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리데이터 등이
기재된 시험데이터가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변경이 인정됨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내용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하자 치유 가액 배제 - 2국

의약용도반명의 경우 약리효과가 나타나있는 시험데이터 등
의 기재가 필요한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후에
이러한 기재를 추가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사안

(1) 반명의 실험 기재요건 충족 여부 - 2국

출원 씨에 약리효과 기재된 약리효과가 명확하게 개시
된 사안이고, 甲은 선택용 치유 과정의 효과 뒷받침하는
시험데이터 기재 없으므로 甲 출원반명은 미연상 반명
임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2) 하자 치유 가액 - 2국

甲은 출원시에 실험 데이터는 기재하지 않은 바 후에
반명을 통해 추가하는 것을 신규사항추가로서 허용될
수 있다.

(V. 결론 (4))

1. 침해 판단 배제

(1) 공합성 판단



특허받은 의약품의 일반적인 기능, 용도, 제품 포장지, 포장
박스 등이 기재된 사항, 광고의 내용 및 방법, 수요자
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기능, 용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2) 라벨 등 기호로 판단

약사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의약품의 라벨 등에 기
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라벨을 입증이다.

2. 검토 - 5개 라벨로

법정안정성 등 고려한 때 라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자가
판대시 그러한 용도로써 사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

① 윌라라틴이 포함된 심장병 치료제로써 특허발명의 ^{의약품인} 구성요소를 포
함하고 있다. ② 이 판매시에 결막염 치료제 ^{구성을} 갖는 ^{의약품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판매시에 결막염 치료제 갖는 ^{의약품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자에게 ^{의약품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판매시에 결막염 치료제 갖는 ^{의약품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해 사용한 점, 뉴스·광고로 인해 결막염 치료제가 될
리 알려진 점 종합적 고려하면 의약품도 구성 포함하
다. ③ 따라서 2 판매는 ① 특허에 침해다.

20.2



20.2

<문-2>

I. 선행 (1)

1. 신규성 의의. 특허·29조 1항

특허는 공개의 대가인바, 출원발명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은 아니다.

2. 출원발명 ^{청구항} _{성질}

甲의 청구항 1은 양측시키고 결합시키는 수단인 표현이 사용될 바, "기능식 청구항"이다.

3. 특허요건 판단시 해석방법 취사

(1) 청구범위의 해석

청구범위의 해석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발명의 설명 등 기재로 제한·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기능식 표현을 포함하는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도 일반적 청구범위 해석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3) 과한 기능을 가진 모든 발명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능을 가진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발명의 설명 등 참조

발명의 설명 등이 용어의 의미가 정의·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를 창작하여 청구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4. 사안

(1) 청구범위 현황 - A+B+C

청구항에는 A+B+C로서 ~~표기~~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은 통해 제하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甲~~ ~~출원~~ 청구항 1은 'A+B+C' 발명으로 특장된다.

(2) 신규성 여부

출원 초기 공지된 인과인스케이프 A+B+C는 출원발명 A+B+C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甲~~ 출원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5. 결론

~~甲~~ 출원에는 신규성 위반 하자가 존재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II. 설명 (2)

1. 침해요건판단시 해석 취지

(1) 발명의 설명 보충해석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청구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발명의 설명은 창작하여
보충해설할 수 있다.

(2) 기능식 표현 의미 명확한 경우

청구항의 기능식 표현 자체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도
같다.

2. 특허발명 학습

창작범위 기재사항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기능식 표현인 명칭시키고 결합시키는 명칭 결합수단
자체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발명의
설명 기재를 보충해설해 보면 특허발명은 'A+B+C1, A+
B+C2, 또는 A+B+C3'이다.

3. 문헌침해 여부 - 연구

① 특허발명과 2 실시발명을 구성 C1, C2 또는 C3 과
C5 를 차이가 있으므로 문헌침해 아니다.

4. 균등침해 여부

(1) 균등침해 관련 쉐시제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에도 균등권이 적용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2) 포괄방법 쉐시제

① 특허반명과 실시반명의 구성 개별성 기능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균등침해 부정확하다.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3) 결론

기능적 청구항에도 일반적인 특허반명과 같이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범위 내의 실시를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균등론 적용 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사안

C1, C2, C3, C5의 차이는 부품 형태나 배치 관계 등을 고려한 때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적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사안은 서로 균등하다. 따라서 2 변형을 균등침해다.
 실사

5. 결론

균등범위에 속하므로 침해다.

〈결〉

14

7..

<문-3>

5

I. 설문 (1)

1. 특허법원 판례 - 1352 호

분쟁 예방 및 간이. 신속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은 특허법원 변제법이 학인 위해 특허법원 판례를 청구할 수 있다.

2. 기속력 극복

(1) 문제점

특허법원 판례 심결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지 않으면 권리 없이 존재한다

(2) 해결

① 특허법원 판례의 취지 등 고려하여 기속력 공백하는 공백, ② 권리분배 원칙에 따라 기속력 부활하는 부활. ③ 심결취소소송을 거친 경우 공백하는 지층이 있다.

(3) 취지

1) 특허법원 판례 무효. 해결

특허법원 판례는 특허권 행권이 미치는 개량된 범위를 확정하는 시도로 당사자 사이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결론

따라서 특허법원 판례 학인심결이 침해소송에서 기속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

특허법의 특허심판 제로 취지, 1642 규정 취지 등 고려할 때 공백으로 있음 타당하나 명문 규정 없는 이상 취지에 따른 수 밖에 없다.

3. 사안

특허법의 특허심판 인용심결이 침해소송 법원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심결은 침해소송에서 제출한 경우 유리한 증거 인정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II. 설문 (2)

5

1. 특허대상발명 한정

(1) 특성방법 취지

1) 설명시 기준

특허대상발명 한정할 때에는 청구범위에 대응되는 설명시 기재될 사항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2) 도면 변경 불가

도면에 기재될 사항으로 특허대상발명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사안

도면에는 변경 근거 기재되어 있어도 변경하여 파악할 수 없음으로 설명시 기준으로 설명시에



기재된 "발명 $Y(A+B+C)$ "로 파악된다.

2. 적법 특장 여부

(1) 청구취지로서 특장 취사체

심결 확장 이후 일사부재의 범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후확장성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2) 청구이유로서 특장 취사체

특허인대상 발명의 구성 제약을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구성은 기재하여 공통성·차이성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3) 사안

발명 $Y(A+B+C)$ 는 사후확장성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특허발명 $X(A+B+C)$ 와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구성은 명확히 기재한 바 적법 특장될 것으로 보인다.

III. 결론 (3)

6.5

1. 확인의 이익

제1항의 확인심판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것은 없다. 즉, 심판청구인의 범용 지위에 불만이 현존하고, 그 불만 해소를 위해 심판 청구라 할지라도

수반인 것은 아니다.

2. 학인대상반명과 실시반명 다른 경우 취재

특히 취재범위학인심판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되고, 소극적 취재범위학인심판에서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법성이 문제될 뿐이며, 학인대상반명과 실시실시반명이 상이한 경우라도 학인대상반명을 기준으로 소극판단 해야한다.

3. 학인대상반명 특장

심판시 및 도면에 모두 반명 근거 기재되어있으므로 실시 2 실시반명과 다르더라도 근거 한정된다.

4. 침해인용 관련

취재에 따르면 침해인용 계속 중인 사범으로 취재범위 학인심판청구가 적법하다인 볼 수 있으므로 침해인용 계속 중인 사범 문제되지 않는다.

5. 장래실시 관련

(1) 관련 규명 - (35) 조항

소극적 취재범위학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학인대상반명 적법 문제된다.

(2) 취사죄

1) 이해관계인 의미

135조 2항 이해관계인이라, 특허권자로부터 대항 받아
올해 입거나 올해 입은 영려가 있는자를 말한다.

2) 학인대사행반명 규정

학인대사행반명을 현재 실시반명 뿐만 아니라 장
래 실시 예정 반명도 될 수 있다.

(3) 사안

이 ~~충분~~ 충분한 학인대사행반명 기준 현재 실시반명 V
마는 다르고, 장래 실시 예정인지는 불명확하다.

6. 결론

이 반명 기준 장래 실시 예정이라면 ~~충분~~ 충분하고, 그
경지 않으면 부족하다. 다만 반명 기준 장래 실시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 충분할 수 있다.

10. 선행 (4)

3.5

1. 문제점

특허반명이 걸리기만 만료로 연결되는 경우 선행 청구한
이익, 학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2. 취사죄



(1) 상표법 관련

상표법 관련 사안에서 취소심결 확정으로 상표권이 갱
 재신청한 경우 유효하게 출원하면 기간에 대해서 제
 2범위 학원심판 소의 이익 인정하는 바 있다.

(2) 주류 제외

주류 제외 학원심판은 현행하는 특허제 제2범위 학원이
 그 목적이 있는 바, 특허제 제2범위 학원인 경우 뿐만 아
 니라 장래 신청한 경우에도 ~~학원~~ 부합하다.

3. 검토

주류 제외 학원심판은 분쟁 예방 뿐만 아니라 조속한
분쟁 해결 목적이 있는 바 장래 신청한 경우
 이는 학원의 이익 ~~인정~~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사안

출원기간 만료 시 특허제 장래로 신청하는 바 학원
 의 이익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으므로
 심판청구 적법하다 / 심판은 제2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므로 기간상권 예상된다.

8-4

I. 서문 (1)

1. 특허법위헌심판 - 1352 회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특허
반영 특허법의 학원 위해 특허법위헌심판 청구할 있다.

2. 권리대기 여부 - 2주

(1) 정당한 취제

권리대기 정당한 특허법위헌심판은 원칙적으로
부합법하고, 예외적으로 양 반영 이용관계 (98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법하다.

(2) 동일성 관련 취제

특원대생반영이 후특허반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권리대기 특허법위헌심판으로 볼
수 있다.

(3) 사안

특원대생반영 $A+B'+C$ 와 2 특허반영 $A+B+C$ 를
비교해 보면 B와 B'의 차이는 과외해결을 위한 구
체적 수단에서 즉외관통기구의 학가. 삭제. 변경 등이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반영하지 않은 정도는
넣어준다. 이는 양 반영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청구한 권리법

위 현인심판을 권대채권 지극히 권대범의 현인심판이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3. 이용침해 여부 - 소

(1) 이용침해 범위 체계

이용침해란 실시반명이 미등록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반명이 시행 특허반명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추가한
반명으로서 시행반명의 본질을 적법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수~~ 실시반명에서 시행 반명이 반명
으로서 일체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반
명과 동일한 발명 뿐만 아니라 ~~근~~ 근등한 발명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2) ~~문헌~~ 근등을 판단방법 체계

양 발명이 근등한지 여부 판단 시에는 ① 양 발명의
과제 해결유지가 동일인지, ② 양 발명의 작용효과
가 식으로 동일인지, ③ 통상 기술자가 쉽게 생각
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문헌이용 여부 - 소

물건 $A+B'+C$ 는 θ 특허반명 $A+B$ 와 비교
하여 B, B' 의 구성 차이가 있으므로 문헌이용
침해 아니다.

(4) 균등이용 여부 - 소

구성 B와 B'은 비교해 보면 실시예에서 유사한 기능 작용을 포함하는 하나 기록상 기재된 증 제함으로써 통상 기술자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므로 균등한 발명은 이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균등이용침해가 아니다.

4. 결론

핵심대역이 아니고 다른 방식 사유로 보이기 않아 심판청구 적법하고, 2의 실시 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 이유 없다. 따라서 기각심판 예상된다.

II. 서문 (2) 3

1. 학인대상발명 특성 위시

(1) 마이크로칩 특성

학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구성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칩구축시퀀스 특성

학인대상발명은 사회공정상 다른 것과 차별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종합적 고려

학인대상항반영 시점에서 불명확한 기재가 있거나
 시점이나 양면이 일부 불일치한 부분 있더라도 나
 여지 시점시. 양면 기재는 통해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특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안

시점에서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 시점시. 양면 내용을 통해 구성 B'은 명확
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학인대상 항반영은 사회공
 통상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허반영
 과 서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특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끝>

- 이 하 여 백 -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특허법은 이하, 법이라 한다.)

I. 선택 (1)

1. 횡구항 | 발명 ~~심권~~

우노따타란을 침안하여 결박염을 치료하는 방법, 즉 의
문행위에 관한 발명이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조항은 상 본문

특허는 산업 발명을 그 목적으로 하여 부여되는 바, 산
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만 그 대상이 된다.

3.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경우 제외 사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예방, 예방,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4. 비선

특허법의 '발명'은 창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의료
산업은 비례함이 부정하다는 견해가 있다.

5. 검토

- ① 인간의 존엄성 및 의료행위를 관습으로 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고려할 때,
- ② 미국과 달리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제한 규정도

없을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세계의 제도와 타당하다

6. 사안의 해결 - 기결이유 명부(각주)

① 항항 1은 의약품에 관한 반경으로서 권리 공물에 한정하고 인지도 없다, ② 신약성 이용가능성이 전제되는 것이지, ③ 심사관의 기결이유는 타당하다.

II. 실문(2)

1. 신약성 조건의 범

특히 높은 승계의 디자인, 공개성과 동일하지 않은 것 을 요하는 특허인이다.

2. 각 항항의 성질

① 항항 2는 온종다라인의 의약품에 관한 의약품반영이며,
 ② 항항 3 역시 의약품반영이나 약제기술 부가 기재하였고,
 ③ 항항 4는 항항 2의 반영은 특허방법으로 한정하는 의약품방법 반영이다.

3. 의약품반영의 구성은 세계

(1) 의약품반영의 경우

특정 물질과 그 물질이 가지는 의약품이 반영의 구성

으로 해명한다.

(2) 약리기간의 경우

다만 특정 물질에 새세린 특성을 드러내는데 세기에 불과한 약리기간의 경우 그 지위가 발명의 구성요건일 수 없으며, 다만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학용도로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구성요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의학특여방법의 경우

관습 사회제 라우이견이 아니며, 의학특여방법은 ① 그 본질이 의학용도발명이나 같고, ② 의학특여방법 연계를 상응한 노력·비용 투자에 예성하기 못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원리작용 보충을 목적으로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바, ③ 의학특여방법 역시 의료행위가 아닌, 물질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4. 사안의 해명

(1) 횡방향 2의 경우 - 개량어귀 타당

甲의 특허청인 김 동은이 물질인 '올로파타딘'과 의학용도인 '결막염 치료용'이 모두 구리작용 개서되어 있는바, 발명의 구성요건 모두 충족하여 신규성을 충족하게 된 점과 심사관 개량어귀를 타당하다.

(2) 횡방향 3의 경우 - 개량어귀 타당

· '일각 시도를 인정하지는'이라는 약어로는 부합한다 하여
 그와 반영의 구성으로 인정된 수는 없으므로, 청구항 2와
 같이 문장의 용어가 모두 용어에 신개성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리라.

(3) 청구항 4의 경우 - 기결이 부합

·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이라는 특이방법이 구성으로
 큰 부가된 것으로, 그 특이방법이 공제된다면 사상이
 보이지 않아 신개성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결이도 부합하.

III. 심문 (3) **4.5**

1. 위약응답반영의 반영의 심문 기재인 뒤이제

특정된 약어기반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는 등이 특별한
 사상이 없는 한, 지출하는 뒷반영은 약어기반 등을
 획득하거나 이에 대안한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만 반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
 시히 기재된다는 불충족하는 일이다.

2. 반영을 통한 하라라유 가부 뒤이제

위와 같은 약어기반은 약어기반 또는 구체적 후가세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가하는 반영은 신개성 후가에
 해당하지 하리라 수 없다는 일이다.

3. 사안의 해설

(1) 특별한 사정 분류 (2점)

甲 측인 권 윤라타인의 약리권이 명확하게 밝혀
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선행 데이터 기재 여부 (각각)

여기서 甲은 윤라타인의 전약명 리스용도에 관한
약리데이터를 기재하거나 그에 대신한 두 읽음 길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어야 한다.

(3) 변경 가부 (2점)

甲이 치료효과는 뒷반침하는 선행레이터는 추가하는 등의
변경을 할 경우, 이는 미완성 변경을 완성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신규사상 추가에 해당한다 하, 그와 같은
변경으로 하자를 과유할 수는 없다.

IV. 결론 (4)

4.2

1. 문제점

의약품개발의 침해 판단은 어렵게 한 것의 문제된다.

2. 쟁점

(1) 사권등법원 쟁점 - 종합적 판단

해당 의약품권이 갖는 용도 내지 기능, 침해 의종의

특성에 기재된 용도, 상인·신인의 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할 바 있다.

(2) 특허법원 (2017) 2 - 라벨론

침해를 주장하기 기재된 용도에서 기능을 고려하여 판
단하는 라벨론을 취할 바 있다.

3. 검토

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라벨론은 중요하고 하리. ② 침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물 판매 행위·의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4. 사안

① 비록 Z의 판매가름 Y에는 '삼양병 피로회복'만이 의약품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Y는 '올트라다인'이라는 문장을 표
함하고 있다. ③ Z은 甲 특허청 후 이를 '전약업 디
스펜서'으로 각각 관여하여 판매 중인 바, ④ Y는 구제사들
역시 이를 전약업 차음기기에 사용하는 이상, ⑤ 침해로
봄이 타당하다.

5. 심판의 해결 - Z 침해 인정

Z은 Y 판매로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확인)

(확인)

[문제-2]

I. 선택

1. 항항 의 선택

'완충' 및 '조합'이라는 기능의 관행을 포함하는 기능식 항항에 해당한다.

2. 기능식 항항 특허권 판단시 해석방법 위배제

(1) 항항의 기능 판단 원칙

항항의 기능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권사로부터 기재된 발명으로서, 항항의 기능을 기준으로 발명은 파악해야 한다.

(2) 발명의 설명 파악

다만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은 참작하여, 발명 특성을 고려한 경우 이를 근거로 그 용도에 의해 판단하거나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3) 기능·제한 해석 금지

다만 이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등에 의해 항항의 기능·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4) 기능식 항항-미관까지

이러한 법리는 발명의 구조·방법 등이 아닌 기능·성질 등으로 표현한 기능식 항항의 경우에도 미관까지이다.

(5)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발명

따라서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

(6) 변호 용의 강박적인 행위

반영의 신영 등에 용의에 대한 강박이 차는 경우 이를
강박하여 반영은 피박해야 한다.

3. 강박

항구방위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능을 갖는 모든 반영으로 해석
하여 출신인의 항구방위 강박을 유권함의 타당하다.

4. 사안 - 신영 부형

① 甲 항구방위는 'A+B+C'의 반영의 개체가 차는데,

② 이때 'C'를 '원형' 및 '신영의 ~~신영~~ 기능' 가지는

모든 반영으로 해석해야 하고, ③ 이때 반영의 신영에

위해 이를 차는 해석할 수는 없는 바, ④ 'C'는 공

적인 인공인스케이트 'A+B+C₄'의 'C₄'를 포함한다 한 것

으로, ⑤ 甲 항구방위는 공반영을 포함하여 신영 부형

관련 한 것이다.

5. 신영의 해석 - 등록 부하

① 따라서 甲 항구방위는 차는 상 위반으로 등록 불가하다.

② 다만, C를 D1에서 C2으로 차는 변경하면 등록 가능할 것이

다.

II. 식별 (2)

1. 문제점

① 가능성 항구의 침해인 것인지 해석방법과, ② 가능성 항구의 근원을 귀속 가부가 문제된다.

2. 가능성 항구의 침해인 것인지 해석방법

(1) 사례 - 보충해석

① 가능성 표현은 포함하여 반영의 구체적인 가능성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 반영의 설명·도면은 참작하여 보충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이는 가능성 표현이 그 자체로 명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2) 검토

가능성 표현만으로는 반영의 관습상세 및 근원을 파악하기 어려운바, 사례에 타당하다.

(3) 사안

① 甲 항구의 'A+B+C'는 'C'가 가능성 표현으로 기재된 바, ② 그 자체로는 가능성 구성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③ 반영의 설명을 참작하여 보충해석할 필요가, ④ 'C'는 'C1', 'C2', 'C3'로 해석되어야 한다.

3. 문언 침해 여부(속)

甲의 'C1'에서 'C3'과 乙의 'C5'는 다른 권리로서,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준등 침해 여부 (각각)

(1) 수치제

- ① 구성의 개변의 가능성은 그에게 준등 여부를 판단할 수치제와
-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 노력 없이 쉽게 변형 가능할지. 즉 준등범위 내에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치제가 있다.

(2) 온도

- ① 기술적 향방으로 준등이 인정된다는 한 것이며, ② 그 기술적인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 변형 가능한 준등범위 내에 들어갈지를 기준으로 한다 할 것이다.

(3) 사안

- ① 甲의 권리항 1에서 'C'를 'D'에서 'E'로 해석한다.
- ② 乙의 'C'가 이를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기술 노력 없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할 것일시, ③ 준등 침해에 해당한다.

5. 심판의 예전 - 침해 인정

乙의 행위는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출]

14

[문제-3]

I. 선택 (1)

1. 권태법위탁인상판 조. 135조

간이. 신속한 보행 예방 및 예방을 위해, 권태법위 위탁에 따른 공익 판단은 구하는 레이어이다.

2. 권태법위탁인상판 상원의 침해행위 구제권 범위

(1) 권리

① 긍정적으로, 권태법위탁인상판의 간이. 신속한 보행 예방 등의 목적. 취지는 권리로 보는 견해. ② 부정적으로, 관한 불배를 권리로 보는 견해. ③ 권태법으로, 침해행위행위권 가진 뒤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

(2) 위법성

권태법위탁인상판은 특정한 객관적인 권태법위는 확인하는 기준으로, 침해행위권 달리 양자간 권태법위법을 타당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아닌 바, 침해행위에 대해 그 상원의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 한다.

(3) 결론

① 권태법위탁인상판의 신속한 보행 예방. 예방 취지로서 공익성을 인정 타당하다. ② 구속력에 대한 영문 규정이 없는 한계 법제상 위법성에 따른 득법에 있다.



2) 항나아유로서의 특징

또한 특인대응반영은 특허반영과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는 강령과 구체적으로 특징해야 한다.

3) 신명사외 도면의 불인리가 같은 경우

도면에 불인리가 있는 경우나 하더라도, 특인대응반영이 특허반영의 권내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두 권내면 각각에게 특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안

- ① 상술한 바와 같이 특인대응반영은 Y(A+B+C)로서,
- ② 사회통용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① 특허반영과 대비할 수 있는 강령과 특징된 것으로 보이며, ③ 도면에 불인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권내범위 속부 인원에 문제가 없으나, ④ 특인대응반영은 각각에게 특징되어 있다.

III. 실용 (3)

1. 문제점

사안과 같이 특정 권내범위특인성원의 항나아유가 현재 신사출의 반영과 특인대응반영이 다른 경우, ① 무엇이 상반대응이 되는지와 ② 신사출에 특인의 이익은 없다 ③ 장에 신사 출원 문제가 논해진다.

2. 권리방기확인서인 확인의 이익

권리방기확인서인 심판청구인의 청구 자위에 현물이나 복안은
제기할 유익한 수단이어야 한다.

3. 심판 대상 확정

(1) 취지

특정 권리방기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행위와 심판청구인이 신세
신세하는 행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심판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이 신청서 등에 특정한 확인대상행위가 대상이
된다는 양상이다.

(2) 사안

따라서 Z이 신세한 Y와 확인대상행위 신세 등에
기대한 조항 Z(A+B+C)가 심판 대상으로 확정된다.

4. 이해관계 문제

(1) 특정 권리방기확인서인 확인서인 법적 효력으로 상

소극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인 자격을 갖는다.

(2) '이해관계인'의 의미 취지

특히나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은 양자가 같은
자를 의미한다.

(3) 장래의 이익 행위 취지

이해관계인은 확인대상행위로 장래의 이익 행위 행

아니라 강제 실시 예정인 법령은 확인대상법령으로 삼을 수 있다.

(4) 사안

① 것은 甲으로부터 침해권행위를 제각각에 권리의 대상으로 받은 지배관계인이기 책임하며, ② 온가 비록 현재 실시 중인 법령은 아니나 하더라도 강제 실시 예정인 법령이면 확인대상법령으로 삼을 수 있다.

5. 강제 실시 가능 문제

(1) 제1제

만일 강제 실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인대상법령의 경우 상한 행위는 부각행위라는 입장이다.

(2) 사안

그이 조를 관해 실시 예정 없거나 실시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사항은 반이 아니다.

6. 식물의 해질 - 상한행위 반복 (각주)

위와 같은 사안 종합할 때, 그의 상한 행위는 반복행위.

IV. 식민 (4)

1. 문제점

3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시 강제로 소멸하는 바, 이 경우 상한 권리의 이익이 문제된다.

2. 상한

- ① 권리 발생 해로운 가해 상한권자의 이익이 유익을 증진함,
- ② 특허권 소멸시에는 상한권자 이익 없이는 부당함 있다.

3. 위계제

권리범위확대입원 진행 중 특허권이 강제로 소멸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상한권자 이익 소멸시 위계제라는 개념이다.

4. 상한

- ① 특허권이 소멸 소멸한 경우는 별론. ② 강제 소멸시 권제한 권리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범위확대입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③ 상한권자의 이익 없다는 점이 타당하다.

5. 사안의 해결 - 특허 기각심판

따라서 상한권은 그의 권리범위확대입원에 대해 기각심판 내려야 한다. 다만 위계제의 선례에 따른 경우 각하심판 내는 것이다. [출]

[문제-4]

I. 식문 (1)

1. 논쟁쟁거

① 해당 상품의 권리에 권리 부여로 각부 필한 후, ② 불안
감정하여 이용권해 여부 논란.

2. 각부 필한-권리대 권리 여부(의)

(1) 각부식 권해방기 확인심한 法 審 判 所 判

간이. 신축한 불성 예방. 해권을 위해, 특허심사가 확인대상
반영이 특허반영 권해방기 속한서 인한 권한 제로이다.

(2) 권리대 권리 작성한 하부 뒤제

① 원권자로 신 특허심사가 후 특허심사는 내성으로 하도 각
각 권해방기 확인심한 하도 있다. ② 이용권해인 경우
하도하도 양상이다.

(3) 사안

① Z은 $A+B+C$ 의 특허권자인데, ② Z이 신사는 반영자
甲이 확인대상반영으로 특정한 $A+B+C$ 는 B'에 의해
B와 차이가 있다, ③ 그 차이는 리해해권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수치증가들의 부가. 삭제. 변경 등을 담기서는
임의로 신권으로 주장하긴 볼 수 없다. ④ 따라서
甲의 승환 권한 권리대 권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
각부하도.

3. ~~보안~~ ^{침해} ~~침해~~ ^손 여부 (특)

(1) 이용관계 범위 (특)

후 반영이 미숙한 경우라도 이용관계 성립시 침해에 해당한다. ① 이용관계는 신 특허반영 가동시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는 부가한다. 신 특허반영의 요소를 전부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이용하다. 신 특허반영의 반영으로서의 인치 상도 전혀 다른 성부에 해당한다. ② 이는 큰 특정 반영은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2) 문헌 이용 여부 (특)

① 甲의 특허반영은 $A+B$ 이다. ② 乙의 확인대상반영은 $A+B'+C$ 이다. ③ B와 B'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극한 차이 수준에서 추진 반영 기술의 특성 상대 변형 등에 지 나 차 이 대 사 여 서 서 로 인 하 는 차 이 반 영 을 안 한 경 우 를 검 사 하 는 바. ④ 신기술적으로 응용 가능 한 본 문 헌 이 용 관계 에 해 당 안 다.

(3) 준용 이용관계 여부 (특)

(1) 준용 의미 취사-권

아무런 사적 권리는 가하지 않고서도 하여 인에게 대한 특허권 침해 하여 사도 방하는 경우 취사제 의 특 권 침해 법 규 정 에 반 영 인 구 성 이 준 용 한 행 위 반 영 에 속 하 는 것 이 다.

2) 인

- ① 라라해결권자의 동의성, ② 작용권자의 동등성 동의성,
- ③ 구상변경의 용이성을 의미하여, ④ 침해행위가 사후가도 영
- 역이 속하지 않고 권리 ⑤의식적 제타가 없으면 안된다.

3) 구상변경의 동의성 관련 쉐이제

동성의 가환이면 두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양을 안한다.

4) A안

- ① Z의 B'는 B와 차이가 있는데, ② 이는 동성의
- 가환이면 두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영
- 기시도바. ③ 구상변경의 용이성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 ④ Z는 甲 변경과 조별한 변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 ⑤ 따라서 준용이용가능해 부정된다.

4. 실문의 해설 - 기각심판 여부

- ① 甲의 승인청구는 적법하나, ② 후변대승인청구가 甲의
- 적법성에 속하지 않아 기각됨 것이지.

II. 실문 (2) **2.5**

1. 후변대승인청구 적법특성 쉐이제

(1) 청구취지의 특성

후변대승인청구는 사회관행 다른 권리 구별된 두 권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2) 광어구내의 특정

광어 특허반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3) 인부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특허대상반영의 실행여부 조판이 인부 불명확하거나 인부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특허대상반영의 실행 여부에 대응 조판 등 광어 특허반영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적당하게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인의 해석

- ① 비록 A가 인명지에 기재된 B' 특성에 있어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기재를 했으나, ② 인명지의 나머지 내용과 여러 조판들에 의해 구성 B'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③ 권리범위 책 정한 후에 있어 아무런 상충이 없다면, ④ 적당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아나 예외)